

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

(앞쪽)

제출법인	①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	---------	---------

면제세액 계산내용

소득금액	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	
	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	
	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	
	⑨ 면제(감면)대상이 아닌 소득금액(⑥, ⑦, ⑧ 제외)	
	⑩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	
	⑪ 소득금액 계 (⑥ + ⑦ + ⑧ + ⑨)	
면제 · 감면세액	⑫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(⑦) 중 면제 대상 소득금액 한도액	$\text{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금액} \times \frac{50\text{억원} \times \frac{\text{사업연도 월수}}{12}}{\text{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}} =$
	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[⑥ + (⑦과 ⑫ 중 작은 금액)]	
	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	$\text{법 제68조 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면제대상 소득}}{\text{과세표준}} =$
	⑮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 (⑧-⑩)	
	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(⑮)에 대한 세액감면	$\text{법 제68조 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감면대상 소득}}{\text{과세표준}} \times \text{감면율 (50\%)} =$
	⑰ 합계(⑭ + ⑯)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5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"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"란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2. "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"란은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가.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축산업,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 - 나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 - 다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
3. "⑨ 면제(감면)대상이 아닌 소득금액"란은 농업회사법인의 총 소득 중 "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", "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", "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"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4. "⑩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"은 '19.2.12. 이후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비중이 50%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 초과인 경우 그 농업회사법인의 도·소매업 및 서비스업(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) 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5. "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"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"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"에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·비과세소득·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「법인세법」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.
6. "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"란의 감면대상 소득은 "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"에서 "⑩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"을 차감한 뒤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·비과세소득·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「법인세법」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.
7. "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"란의 면제대상 소득과 "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"란의 감면대상 소득을 더한 금액은 「법인세법」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8. "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"은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.